
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 RISE 코스닥 15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 1. ~ 7. 생략 8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생략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 1. ~ 7. 좌동 (신설) 8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 (신설) 9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 (신설) 10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(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)(이하 "어음"이라 한다) 11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좌동</p>
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1. ~ 3. 생략 4. 제1호에 따른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이하로 한다. 5. ~ 6. 생략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1. ~ 3. 좌동 4. (삭제)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이하로 한다. 5. ~ 6. 좌동 (신설) 7.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</p>

		<p>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8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9.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10.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
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다만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3. ~ 7. 생략</p>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좌동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<u>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u></p> <p>가. <u>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</p> <p>나. <u>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u></p> <p>3. ~ 7. 좌동</p>
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</p>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, 제2호,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</p>

	<p>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③제19조 제2호,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생략</p>	<p>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, 제2호,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좌동</p> <p>③제18조 제7호, 제19조 제2호,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좌동</p> <p>(신설)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하락일로부터 3개월(이하 "처분기간"이라 한다)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21.64%	수익률 변동성: 59.78%
	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	위험등급: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
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	

	변경 포함
--	-------

- KB RISE ESG 사회책임투자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</p> <p>1. ~ 6. 생략</p> <p>7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생략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</p> <p>1. ~ 6. 좌동</p> <p>(신설) 7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(신설) 8.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(신설) 9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(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)(이하 "어음"이라 한다)</p> <p>10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좌동</p>
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1. ~ 5. 생략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1. ~ 5. 좌동</p> <p>(신설) 6.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7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8.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</p>

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3. ~ 7. 생략 	<p>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 (신설) 9.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좌동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<u>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u> 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까지 투자하는 경우 3. ~ 7. 좌동
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

	<p>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③제19조 제2호, 제3호 가 목 및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생략</p>	<p>로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6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좌동</p> <p>③제18조 제6호, 제19조 제2호, 제3호 가 목 및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좌동</p> <p>(신설)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(이하 "처분기간"이라 한다)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
	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</p>	
투자설명서	<p>수익률 변동성: 16.97%</p> <p>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</p> <p>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</p>	<p>수익률 변동성: 38.01%</p>

- KB RISE 고배당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</p> <p>1. ~ 6. 생략</p> <p>7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</p> <p>1. ~ 6. 좌동</p> <p>(신설) 7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</p>

	<p>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생략</p>	<p>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(신설) 8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(신설) 9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(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)(이하 "어음"이라 한다)</p> <p>10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좌동</p>
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1. ~ 3. 생략</p> <p>4. 제1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이하로 한다.</p> <p>5. 생략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1. ~ 3. 좌동</p> <p>4. 제1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이하로 한다.</p> <p>5. 좌동</p> <p>(신설) 6.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7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8.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9.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

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예금은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3. ~ 5. 생략 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좌동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<u>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</u>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<u>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국채증권, <u>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 3. ~ 5. 좌동
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</p>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</p>

	<p>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, 제19조 제2호,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③제19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생략</p>	<p>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좌동</p> <p>③제18조 제6호, 제19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좌동</p> <p>(신설)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(이하 "처분기간"이라 한다)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투자설명서	위험등급: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	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
	수익률 변동성: 14.60%	수익률 변동성: 34.95%
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	

- KB RISE Fn5G테크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</p> <p>1. ~ 6. 생략</p> <p>7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생략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</p> <p>1. ~ 6. 좌동</p> <p>(신설) 7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</p>

		<p>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(신설) 8.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(신설) 9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(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)(이하 "어음"이라 한다)</p> <p>10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좌동</p>
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1. ~ 6. 생략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1. ~ 6. 좌동</p> <p>(신설) 7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8.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9.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
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</p>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좌동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</p>

	<p>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.</p> <p>3. ~ 7. 생략</p>	<p>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<u>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</p> <p>3. ~ 7. 좌동</p>
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③~④생략</p>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6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좌동</p> <p>③~④좌동</p> <p>(신설)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(이하 "처분기간"이라 한다)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</p>

		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23.59%	수익률 변동성: 58.49%
	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	위험등급: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
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	

- KB RISE Fn수소경제테마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 1. ~ 6. 생략 7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생략	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 1. ~ 6. 좌동 (신설) 7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 (신설) 8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 (신설) 9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(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)(이하 "어음"이라 한다) 10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좌동
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

	<p>1. ~ 6. 생략</p>	<p>1. ~ 6. 좌동 (신설) 7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 (신설) 8.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 (신설) 9.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
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</p> <p>3. ~ 7. 생략</p>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좌동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<u>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u> 가. <u>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</p> <p>3. ~ 7. 좌동</p>
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</p> <p>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</p> 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</p> <p>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</p>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</p> <p>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</p> 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</p> <p>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</p>

	<p>하는 경우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③~④생략</p>	<p>하는 경우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6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좌동</p> <p>③~④좌동</p> <p>(신설)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(이하 "처분기간"이라 한다)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24.94%	수익률 변동성: 46.25%
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	
	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	

- KB RISE IT플러스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</p> <p>1. ~ 6. 생략</p> <p>7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생략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</p> <p>1. ~ 6. 좌동</p> <p>(신설) 7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</p>

		<p>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(신설) 8.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(신설) 9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(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)(이하 "어음"이라 한다)</p> <p>10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좌동</p>
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1. ~ 5. 생략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1. ~ 5. 좌동</p> <p>(신설) 6.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7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8.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9.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
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</p>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좌동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</p>

<p>예금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</p> <p>3. ~ 7. 생략</p>	<p>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3. ~ 7. 좌동</p>
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4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

	<p>1. ~ 5. 생략</p> <p>③제19조 제2호, 제3호 가 목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생략</p>	<p>1. ~ 5. 좌동</p> <p>③제18조 제7호, 제19조 제2호, 제3호 가 목 및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좌동</p> <p>(신설)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(이하 "처분기간"이라 한다)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19.85%	수익률 변동성: 43.69%
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	
	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	

- KB RISE 2차전지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</p> <p>1. ~ 6. 생략</p> <p>7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생략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</p> <p>1. ~ 6. 좌동</p> <p>(신설) 7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(신설) 8.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(신설) 9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</p>

		<p>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)(이하 "어음"이라 한다)</p> <p>10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좌동</p>
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1. ~ 6. 생략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1. ~ 6. 좌동 (신설) 7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 (신설) 8.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 (신설) 9.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
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</p> <p>가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시가총액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</p>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좌동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시가총액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</p>

	<p>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.</p> <p>3. ~ 7. 생략</p>	<p>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.</p> <p><u>나. 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</p> <p>3. ~ 7. 좌동</p>
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~④생략</p>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~④좌동</p> <p>(신설) ⑤ <u>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(이하 "처분기간"이라 한다)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</u></p>
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</p>		

투자설명서	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/강은표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/봉철우	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동환/봉철우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이도진/강은표
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※ 설정 후 3년 미경과	

- KB RISE 게임테마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 1. ~ 6. 생략 7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생략	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 1. ~ 6. 좌동 (신설) 7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 (신설) 8.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 (신설) 9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(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)(이하 "어음"이라 한다) 10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좌동
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1. ~ 5. 생략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1. ~ 5. 좌동 (신설) 6.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

		<p>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7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8.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9.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
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예금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3. ~ 7. 생략 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좌동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까지 투자하는 경우 3. ~ 7. 좌동
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

	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③제19조 제2호, 제3호 가 목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생략</p>	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,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6호, 제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좌동</p> <p>③제18조 제6호, 제19조 제2호, 제3호 가 목 및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좌동 (신설)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(이하 "처분기간"이라 한다)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30.63%	수익률 변동성: 63.06%
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	
	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	

- KB RISE 미국반도체NYSE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주식)(H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	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

	<p>1. ~ 7. 생략</p> <p>8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제4조의2에 의해 지정된 해외보관대리인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생략</p>	<p>1. ~ 7. 좌동</p> <p>(신설) 8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(신설) 9.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(신설) 10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(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)(이하 "어음"이라 한다)</p> <p>11.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제4조의2에 의해 지정된 해외보관대리인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좌동</p>
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1. ~ 7. 생략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1. ~ 7. 좌동</p> <p>(신설) 8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9.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(신설) 10.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
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</p>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</p>

	<p>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3. ~ 10. 생략 	<p>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좌동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<u>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u> 가. <u>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 3. ~ 10. 좌동
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~④ 생략</p>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~④ 좌동</p> <p>(신설) ⑤ <u>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(이하 "처분기</u></p>

		간"이라 한다)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투자설명서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변경 포함 ※ 위험등급 변경 없음 ※ 설정 후 3년 미경과	

2. 변경(예정)일: 2025년 03월 07일(금)